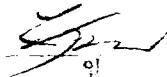


# 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사49 4324	(전화번호 342 )	전결규정 조 호 전결사항
처리기한	기안자 결 제 자		
시행일자	1968. 1. 9	김익신 퇴직청구장	
보존년한	30년	기안일자	67. 12. 29
보	기획심의과장	제	퇴직청구장
조	계획계장	관	김익신
기		관	
관		관	
현	조	성계계장	김익신
경	수	환계계장	서우과장
수	신	각	관
관	조	관	관
제	류	퇴직청의심시	별정
제	류	내부결재	

공포시 4호

확  
인  
부  
인  
부

67. 11. 2 (서울특별시 공고 제169호) 영혼 징용 퇴직  
양부 변회 지구등의 사업실시 계획을 변경할라고 퇴직 5주과 등에게  
14일간 종란에 공하고 건설부 장관에게 인가 신청하였은바  
건설부 공고 제 156호 (67. 12. 20) 로 변경실시 인가 되었이  
다음과 같이 확인공고 하고 신청로서 함이다.  
단, 퇴직 5주과 등지는 새로이 지구내를 경인된 퇴직 소위자와  
제외하고 5주지대 한하여 퇴직공권 함이다.

공고 제 119 호 3-2

제 2안 (공고안)

제목 동건

장동, 연희, 여촌, 화양, 양우, 등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 
변경 실시계획을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실시  
하고 있음을 공고 합니다  
변경 내용에 대한 관계서류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 
비치하고 있습니다

1962. 1. 9  
서울특별시

제 3안

수신 각 사업소장 발신 시장

제목 동건

별첨 공무원의 결의 귀 사업을 반할 토지구획정리  
지구인 실시계획이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되었기 사업  
실시에 지장 없게 바뀐

전부 변경이 1 통  
공고 1 통

제 4안

수신 토지구획 (지구변과 및 제2차) 발신 시장

제목 동건

1. 귀하의 소구되는 67. 11. 2 서울특별시 공고 제 119 호  
로 변경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종래에 공하고 건설부 장관에게  
인가 신청 하였으나 67. 12. 20 건설부 공고 제 156 호로 인가  
되어 사업지구내 또는 외로 편입내지는 계획 되었기 통지

함니다

전부 공고문 사본 부를

제 5안

수신 공보실장

발신 과장

재무 동선

별지 공고문 사본과 같이 공 단외에서 통지 하여

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전부 공고문 사본 부를